

8.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1998-329호 1998. 10. 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8조제3항에 의해 일반 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6. “주계약자형관리방식”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해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일반 건설업자(“일반건설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안을 통한 협력)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안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시공협력협의회 구성·운영)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협력업자가 참여하는 시공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중 시공기술 및 공사 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자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관리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강사 및 교육시설의

지원이나 비용분담 또는 합동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은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표1,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제12조(평가기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제13조(평가시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5월말까지 발표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협력업자 육성사항 중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는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④대한건설협회는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중앙부처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표3,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표4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다음 년도 2.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중(면허·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 현황(별표 5 양식)
2. 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실적 현황(별표 6 양식)
3.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별표 7 양식)

4.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한 협력관계 입증서류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 PQ 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능력평가지 우대사항

가. 90점 이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나.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다.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라.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2. PQ 심사시 우대사항

가. 90점 이상 : 5점 가산

나. 80점 이상 ~ 90점 미만 : 4점 가산

다. 70점 이상 ~ 80점 미만 : 3점 가산

라. 60점 이상 ~ 70점 미만 : 2점 가산

②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시공능력 평가지 : 평가결과에 의한 점수에 따라 당해연도 시공능력 평가지 우대

2. PQ심사시 :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발표이전일까지 우대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 고
	항 목 별	배 점	
1. 공동도급 실적 (15점)	가. 공동도급계약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0	기본점수 15점
	(1) 90%이상	10	
	(2) 80%이상 ~90%미만	8	
	(3) 70%이상~80%미만	6	
	나. 수주액 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1) 5%이상	5	
(2) 3%이상~5%미만	3		
2. 하도급실적 (40점)	가. 수주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0	
	(1) 55%이상	40	
	(2) 45%이상~55%미만	30	
	(3) 35%이상~45%미만	20	
	(4) 20%이상~35%미만	10	
3. 협력업체 육성 (45점)	가. 공사대금의 적정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국가별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처분 받은 실적	15	
	(1) 경고 1회	-1	
	(2) 시정권고 1회	-2	
	(3)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3	
	(4) 과태료 1회	-4	
	(5) 고발 1회	-5	
	(6) 과징금 1회	-6	
	(7) 입찰참가제한 1회	-7	
	(8) 영업정지 1회	-8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 고
	항 목 별	배 점	
	나.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 받은 실적	15	기본점수 15점
	(1) 경고 1회	-1	
	(2) 시정권고 1회	-2	
	(3)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3	
	(4) 과태료 1회	-4	
	(5) 고발 1회	-5	
	(6) 과징금 1회	-6	
	(7) 영업정지 1회	-7	
	다.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표창 받은 실적	5	
	(1)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1회	5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라.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10	
	(1)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실시	5	
	(2)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아래분야중 2개분야 이상 지원시)	5	
	· 경영 및 재무분야		
	· 기술 및 기능분야		
	· 교육분야		

※ 공동도급 실적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일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의 협력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 고
	항 목 별	배 점	
1. 하도급실적 (45점)	가. 수주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5	기본점수 20점
	(1) 50%이상	45	
	(2) 40%이상~50%미만	35	
	(3) 30%이상~40%미만	25	
	(4) 20%이상~30%미만	15	
2. 협력업체 육성 (55점)	가. 공사대금의 적정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처분 받은 실적	20	
	(1) 경고 1회	-1	
	(2) 시정권고 1회	-2	
	(3)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3	
	(4) 과태료 1회	-4	
	(5) 고발 1회	-5	
	(6) 과징금 1회	-6	
	(7) 입찰참가제한 1회	-7	
	(8) 영업정지 1회	-8	
	나.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 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20	
	(1) 경고 1회		
	(2) 시정권고 1회	-1	
	(3)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2	
	-3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 고
	항 목 별	배 점	
	(4) 과태료 1회	-4	
	(5) 고발 1회	-5	
	(6) 과징금 1회	-6	
	(7) 영업정지 1회	-7	
	다.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표창 받은 실적	5	
	(1)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장 표창 1회	5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라.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10	
	(1)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실시	5	
	(2)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아래분야 중 2개 분야 이상 지원시)	5	
	· 경영 및 재무분야		
	· 기술 및 기능분야		
	· 교육분야		

<별표 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법 인 (주민등록번호)			⑤ 업 증 명						
⑦ 전년도총수주액(A) (자기공사 제외)		계	민 간 공 사	공 공 공 사	⑧ 공공도급 계약실적(B)		계	민 간 공 사	공 공 공 사	⑨ 협력업자수
건설교통부 고시 제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신청인(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 공동도급실적(15점)										
협력업자와의 계약실적(8점)				(1) 계약금액(C) : (2) 공동도금액대비비율(C/B) :				신청접수		
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의한 계약실적(7점)				(1) 계약금액(D) : (2) 수주액(D/A) :				신청접수		
2. 하도급실적(40점)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40점)				(1) 하도급금액(E) : (2) 수주액대비비율(E/A) :				신청접수		
3. 협력업자·육성(45점)										
공사대금적정지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기본점수 15점)				(1)경 고 : 회 (2)시정권고 : 회 (3)시정명령(지시) : 회 (4)과 태 료 : 회 (5)고 발 : 회 (6)과 징 금 : 회 (7)입찰참가제한 : 회 (8)영 업 정 : 회				감 점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 적(기본점수 15점)				(1)경 고 : 회 (2)시정권고 : 회 (3)시정명령(지시) : 회 (4)과 태 료 : 회 (5)고 발 : 회 (6)과 징 금 : 회 (7)입찰참가제한 : 회 (8)영 업 정 : 회				감 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 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로부터 표 창받은 실적(5점)				(1)중앙부처 장관 이상 또는 대한건설 단체총연합 회장 표창 : 회 (2)시·도지사 표창 : 회				신청접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 관리(10점)				(1)시공평가 실시여부 : (2)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여부 :				신청접수		
4. 신청점수 합계										
첨부서류 : 1. 공종(번허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2.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 3.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4.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5. 기타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끝.										

<별표 4>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법 인 (주민등록번호)			⑤ 업 종 명
⑦ 전년도총수주액(A) (자기공사 제외)		계	민간공사	공공공사
				⑧ 협력업자수
건설교통부 고시제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신청인(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 하도급실적(45점)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비율(45점)		(1) 하도급금액(B) : (2) 수주액대비비율(B/A) :		신청접수
2. 협력업자·육성(55점)				
공사대금적정지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기본점수 20점)		(1)경 고 : 회 (3)시정명령(지시) : 회 (5)고 발 : 회 (7)입찰참가제한 : 회	(2)시정권고 : 회 (4)과 태 료 : 회 (6)과 징 금 : 회 (8)영 업 정 : 회	감 점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받은 실 적(기본점수 20점)		(1)경 고 : 회 (3)시정명령(지시) : 회 (5)고 발 : 회 (7)입찰참가제한 : 회	(2)시정권고 : 회 (4)과 태 료 : 회 (6)과 징 금 : 회 (8)영 업 정 : 회	감 점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장관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 도지사로부터 표창받은 실적(5점)		(1)중앙부처 장관 이상 또는 대한건설 단체총연합 회장 표창 : 회 (2)시·도지사 표창 : 회		신청접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및 지원 관리(10점)		(1)시공평가 실시여부 : (2)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관리여부 :		신청접수
3. 신청접수 합계				
첨부서류 : 1. 공중(면허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2.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3.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4. 기타 협력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끝.				

<별표 5>

	A	B	C	D	E	F	G	H	I
1	<u>공종(면허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현황</u>								
2	평가신청업체 및 대표자 :								
3	공 종 별 :								
4	협력업자수 :		개사						
5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면허(등록)번호	공동도급		하도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									
.									

주)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평가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만 기재

※ 작성요령 :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화일명 DBF)로 제출

<별표 6>

	A	B	C	D	E	F	G
1	<u>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u>						
2	발 주 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주계약자	공동수급자수 (주계약자제외)	공동수급중 협력업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							
.							

※ 작성요령 :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파일(파일명 DBF)로 제출

<별표 7>

	A	B	C	D	E	F	G
1	<u>공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u>						
2	공 종 별 :						
3	협력업자수 : 개사						
4	협력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시공평가결과	비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							
.							

※ 작성요령 :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전산화일(파일명 DBF)로 제출